

대구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1가단1489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지호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2. 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21. 9. 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21. 9. 9. 접수 D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21. 6. 4. C에게 ‘대출기간 60개월’, ‘지연배상금율 연 6.5%’,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자동차 구매대금 60,2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2) C은 2021. 6. 9. 위 대출금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66,947,606원에 매수하여 신규등록하였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채권가액 1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C은 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21. 12. 22. 기준 원금 47,024,280원, 연체이자 등 1,323원의 합계액 47,025,603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자동차 매매 등

C은 2021. 9. 9.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5,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C은 2021. 9. 9. 당시 이 사건 자동차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 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의 남편인 E이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면서 피고 이름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현금 5,200만 원에 매수한 것이어서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정

별지